

◆ 정부시책 ◆

'97년도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공고

통상산업부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1997년도 신규지원 대상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21호, '97. 2. 20)함

에 따라 해당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된다.

1. 지원분야

사 업 구 분	지 원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에 열거된 181개 기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협력상대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용화개발 연구로서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단, S/W업체, 엔지니어링전문업체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는 예외로 인정)
- ②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③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 ④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전문회사,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 ⑥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 단체
- ⑦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법인

나. 지원규모

- 총 개발비의 2/3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으로 추진

다. 신청방법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함.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181개 기술분야는 공고된 각 기술분야별 개발내용 및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음.

라. 신청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97. 3. 31(월)~
'97 4. 4(금), 5일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02-860-1644/9)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우편번호 152-053)

마. 참고사항

-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 1개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를 년 3억원 이내로 하며 총 개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및 동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함.
- 기술료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50%를 5년 균등분할 약속어음으

로 납부하여야 함.

- 예산사정과 분야별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과제가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사업은 주관기관이 비영리 법인기관이며 2년이상의 과제인 경우는 1차년도 민간참여 및 민간부담금 없이 수행이 가능함.
(단, 2차년도 부터는 반드시 참여기업 및 민간부담금이 포함되어야 함)
- 기술료 非徵收과제로 공고되었으나 심의시 기술료징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시에 개발결과의 공동 활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 자유응모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별로 사업계획을 공고할 예정임('97년 5월경)

바. 문의처

- 세부기술개발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문의
- 음성자동응답안내 : (02)860-1617
- FAX자동응답안내 : (02)860-1628
- PC통신 안내 :
HiTEL, GO KAITECH
- 사업계획서 양식제공 :
하이텔 및 천리안(공개자료실)
- 기계, 금속, 광학 및 기반기술분야 :
(02)860-1653/9
- 화학, 섬유, 요업 분야 :

- (02)860-1673/9 ○ 3월 5일(수) 14:00~
-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S/W분야 : 서울(KOEX), 대전·충남(표준과학연구원), 경북·구미(구미상공회의소), 마산·창원(동남공단)
- (02)860-1633/9
- 전통고유기술 분야 : (02)860-1624/5

3.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가. 일정

- 3월 4일(화) 14:00~
- 강원(태장농공단지), 인천(남동공단), 안산(반월공단), 수원(상공회의소)
- 3월 5일(수) 14:00~
- 서울(KOEX), 대전·충남(표준과학연구원), 경북·구미(구미상공회의소), 마산·창원(동남공단)
- 3월 6일(목) 14:00~
- 충북(청주중소기업청), 광주(하남공단), 대구(대구중소기업청), 부산(부산중소기업청)
- 3월 7일(금) 14:00~
- 전북(이리수출자유지역), 전남(여천공단), 경북·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소), 울산(동남공단)

■ '97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분야(전기관련)

구 분	공 고 번 호 기 술 분 야	세 부 기 술 분 야
전기제품	971-24-01 · 특수 조명용 램프 개발	- 집어등 및 전자식 안정기 개발 - 초고압 UV램프 개발 - 양구급 메탈할라이드램프 개발 - 복사용 램프 개발 - 고휘도 제논램프 개발
	971-24-02 · 가전제품 진동소음 저감기술개발	-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FAN, 렌지후드 등의 소음을 저감하고 효율제고를 위한 진동소음 저감기술 개발
	971-24-03 · 가스기기 연소기술 개발	- 고효율 Bunner개발 - Condensing heat Exchanger개발
	971-25-01 · 고전압 펄스 발생장치 개발	- 100kV급 이상의 고압 Pulse 전원장치 개발 - 대전류 Pulse 전원장치 개발 - 탈활, 탈질을 위한 고압 Pulse 전원장치 개발
중전기기	971-25-02 · 자기진단형 전력 변환장치 개발	- 직접주파수 변화방식의 선박용 주파수 변환장치 개발 - 차세대 Digital UPS개발 - 지능형 정류기 개발
	971-25-03 · 대출력 전기용접기 개발	- 펄스 반복률 1kHz, 출력 2kW급의 대출력 펄스 레이저 용접기 개발 - 6가지 이상의 Pulse Pattern연출 기능을 갖는 저항용접기 개발 - 입력 고역률 방식의 ARC 용접기 개발
	971-25-04 · 자기진단형 차단기 및 비상발전기 System 개발	- 배전선로용 자동차단기 및 관련기술 개발 - 지능형 GIS 진단시스템 개발 - 비상 발전기 진단시스템 개발

중소 개발제품 販路開拓費 지원

정부 각 부처 및 투자기관은 총 연구개발 예산중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가지고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의 판로개척비를 장기처리(1년거치 2년 상환, 연리 6.25-6.5%)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협력업체에 출연하는 자금을 대해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정부는 최근 '제3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경쟁력강화대책을 확정했다.

경쟁력 강화대책 중 중소기업 기술력향상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제도의 도입

중소기업만을 위한 연구개발출연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계획'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통해 조성된 출연금으로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산·학·연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및 보급, 중소기업 기술하부구조 확충을 위한 사업등을 지원.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연구개발예산의 목적 및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중소기업청이 각 부처·기관의 연차별 계획 및 시행결과를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

▲ 신기술제품 판로개척비 지원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사업비의 100%, 3천만원 이내로 제품카탈로그 제작비, 전시회 참가비 등을 장기저리로 지원.

지원 대상기업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술개발자금 신청기업에 한함.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구매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요구기관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고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 상반기중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

또 신기술(NT)인증 획득제품을 공공기관

의 수의계약 대상에 신규로 반영.

▲ 전략기술보급사업의 추진

중소기업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수요조사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미래유망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기술(기법)을 개발·선정해 보급.

상반기 중 국공립 연구기관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를 통해 연구기관별 계획의 조정 및 연구기관간 협조를 강화.

▲ 중소기업 기술이전 촉진사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키 위해 이전대상기술을 체계적으로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공급자와 수요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키 위해 기술박람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 모·수탁기업간 기술협력 촉진여건 조성

모기업 등이 자금을 출연토록 하고 자금출연자가 희망하는 기술협력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기업 등의 출연자금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 및 구

체방안을 확정된 후 연내에 제도화를 추진.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의 공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요원 배정비율을 지난해 총 배정인원의 23%에서 올해에는 30%로 상향조정하고 배정인원의 취업을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및 홍보노력을 강화.

▲ 우수기술력 보유 중소기업 지원강화

중소기업지원제도 운용시 우수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배점의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제도별로 상이한 적용을 시정키 위해 ‘우수기술기업 표준모델’을 마련.

또 유망선진기술기업 선정규모를 확대하고 기술혁신 성과가 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 지원에 공이 큰 모기업 및 전문인 등을 매년 선정해 ‘중소기업기술혁신대상’을 수여.

▲ 스톡옵션제도 활성화

스톡옵션제도가 조기에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홍보 강화.

▲ 지역별 기술개발지원 인프라확충

중소기업청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개방시험실을 설치하고 관련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시제품제작 수요밀도가 높은 지역에 ‘시제품제작센터’ 설치를 유도.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시책 마련

정부는 그린라운드(GR)에 대비, 전자 등 주요 업종별로 미래형 산업발전의 모델을 개발·제시하고 각종 기술개발을 지원할 경우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별도의 산업기술지원자금으로 「청정생산기술자금」을 신설, 운용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종별로 부가가치 수준, 에너지·공해배출 수준 등을 반영한 산업발전 모델을 개발, 보급하며 전자·금속 등 12개 주요 업종에 대해 2백개 청정생산기술 및 공정개선, 업계 공유과제를 도출, 산업환경실천과제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개방, 업계 공유의 과제에 대해서는 실험실 및 공동시험 설비의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지원과 청정생산기술 개발사업을 위해 산업기술자금과는 별도로 가칭 「청정생산기술자금」을 신설,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에너지·자원기술 개발사업, 시제품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각종 기술개발 지원 때 우선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총 3천억원의 산업기반기금을 확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업계의 시설개체 자금이 2001년까지 총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은행의 공해방지 설비자금 내에 산업환경실천과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신설하고 동자금의 금리조건을 정부자금 수준으로 개선하며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락물자 非該當물품 告示

통상산업부는 기계분야 3개품목 18개 물품, 전기분야 8개품목 48개 물품 등 총 11

개 품목 66개 물품을 전략물자 비해당물품으로 추가·고시했다.

전략물자 비해당물품이란 전략물자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략물자 품목 중 그 성능 및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을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통산부는 매년 한번씩 비해당으로 판정된 품목을 정리해 고시하고 있다.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자가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키 어려울 때 수출허가기관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해당물품으로 고시된 물품은 전략물자 통제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일반공산품과 동일하게 통관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번에 추가·고시된 물품 중 한국금속의 양두보링기 등 18개 품목은 새로이 지정되는 것이고 갑을전자의 가정용 위성방송 수신기 등 48개 물품은 모델변경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지침 공고

통상산업부는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에서 지원되는 에너지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18호, 1997. 2. 18)했다.

1.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가. 출연금

-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 32,615백만원

나. 보조금

-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 900백만원

다. 융자금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600백만원

- 대체에너지보급사업 : 30,000백만원

주 : 1) 출연금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함.

2) 보조금 : 대체에너지시범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함.

3) 융자금 : 융자대상기관(에너지관리공단)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며 대출지원금액은 인출기준으로 함.

2. 대출대상

사 업 명	대 출 대 상 자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기술개발 - 연구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에 의거 선정 추진되는 에너지기술개발 수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에너지보급 -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대체에너지 생산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료후 3년 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에 사업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사업자 • 대체에너지의 생산공급자 또는 협동조합 	

3. 대출조건 및 절차

가. 대출조건

자금구분	대출비율	이 자 율	상 환 기 간	당해년도 대출한도
연구자금	소요자금의 100% 이내	연리 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동일 건당 2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80% 이내 (대기업의 경우는 50% 이내)	연리 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소수력발전시설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동일사업자당 10억원
운전자금	소요자금의 80% 이내	연리 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동일사업자당 5억원

※ 시설자금의 대출비율중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기전설비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 토전설비는 소요자금의 25% 이내를 적용한 총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함.

나. 대출절차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해당은행(한국대체신탄공업협동조

합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합니다. 단, 태양열은수기 등 소액(200만원이하)인 태양열 이용시설은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다. 기 타

- 이 지침은 공고일부터 시행합니다.
- 통상산업부공고 제1996-11호(96. 2. 5)는 이 지침 시행일에 폐지합니다.
- 문의처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에너지기술과 (503-9652, 3)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실용화보급과(522-4297)

'97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계획 공고

과학기술처는 연리 6~7%의 장기저리 융자금을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1997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과학기술처 공고 제1997-8호, 1997. 2. 18)했다.

1. '97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계획

지 원 사 업	지 원 대 상	지원규모
선도기술개발사업 -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B-ISDN), 신의약·신농약, 차세대자동차, 첨단생산시스템,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 신기능 생물소재, 환경공학, 신에너지, 차세대원자로, 주문형반도체(ASIC), 차세대평판표시장치, 초소형정밀기계, 의료공학, 고속전철, 감성공학, 차세대초전도토크막장치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프로젝트별 사업주관기관에서 확인된 참여기업의 민간측 대응자금(정부투자기관은 제외함)	500억원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연구개발사업 - 본 연구사업 종료후 연구개발결과의 상품화/실용화에 필요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처 또는 통상산업부에서 확인된 후속연구개발사업 추진기업	50억원

지 원 사 업	지 원 대 상	지원규모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적인 중요 연구 개발사업 - 국책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 출연(연)등의 보유기술 기업화 연구개발사업 - 제조업 경쟁력강화에 직결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추진기업	857억원

- ※ 1. 사업별 지원규모는 기금조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2. 기술담보대출제도 실시를 위한 용자지원액 300억원 포함

2. 용자조건

가. 이 율

- 중소기업 : 6%
- 대기업 : 6.5% (선도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7% (기타)

나. 용자기간

3년이내 거치기간 포함 7년이내

다. 상환방법

원금은 연4회 균등분할 상환, 이자는 매3개월 후취

라. 용자한도

동일사업당 10억원 이내, 동일기업당 30억원 이내

마. 지원비율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80%이

내(단, 정부 선정과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현금부담금의 80% 이내)

3. 용자신청

가. 접수처 : 한국종합기술금융(주)

영업1본부(전기/전자/정보통신 : (02) 782-7600), 영업2본부(기계/금속/화학/기타 : (02)782-7600), 강남지점((02)556-7660), 부산지점((051)463-7320), 광주지점((062)224-4418), 대구지점((053)742-3790), 대전지점((042)861-5177), 안산지점((0345)410-6391), 인천지점((032)424-4682), 수원지점((0331)221-2581~3)

나. 신청서류

소정양식(각 접수처에서 배부)

다. 용자신청 : 연중 수시

공장설립 代行센터 본격 가동

공장입지 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공장설립에 따른 전 과정을 인·허가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일괄대행 처리해주는 ‘공장설립대행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공장설립대행센터는 통상산업부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운동’의 일환으로 민간의 창업 초기단계에 공공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까다롭기로 소문난 공장설립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5개 지역본부에 설립된 기구다.

통산부는 그동안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된 건축법 등 주요 25개 법률의 40개 인·허가 사항을 각기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환경법령 등이 복잡해 민원인이 직접 공장설립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려워 이같은 공장설립 대행센터 설립을 통해 민간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장설립 대행센터에서는 훈련된 공공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공장설립절차를 일괄대행하는 획기적인 서비스체제를 도입하고 공장설립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청과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공장설립업무를 대행해주게 된다.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이같은 일관서비스를 통해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10-15일 이내에,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20-25일 이내에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공장설립대행센터가 정상가동될 경우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공장설립절차에 실질적인 脫규제 효과가 높아지고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준농림지 등 토지이용규제가 많은 지역의 전문대행사에 위탁해 1천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약 1천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이용할 경우 인·허가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가능해 창업기업들이 창업초기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장설립대행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 전화 : 02-829-7331~5
- 팩스 : 02-829-7337